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9권
2008년 8월 pp. 27 ~ 55

논문접수일 2008.07.31
논문심사일 2008.08.12
심사완료일 2008.08.21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 내용의 상세정도에 관한 연구

허 광 욱*

Ⅰ. 서론
Ⅱ. 부적합 통지의 의의
Ⅲ. 부적합 통지내용의 상세정도
Ⅳ. 결론

Ⅰ. 서 론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1]는 CISG 제39조(1)항[2]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

*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전임강사

1)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무가 아닌 권리유지를 위한 의무, 즉 간접의무라고 해석된다.(이태희, 뭑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당사자의 의무", 임홍근□이태희(공편)「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p. 131.) 왜냐하면 매수인이 물품검사 또는 부적합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도인에게 담보의무 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1, p. 59.).

2) Art. 39(1), CISG;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부적합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이 적기에 부적합 치유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물품의 부적합과 관련한 매수인과의 분쟁에 사용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 부적합 통지기간이 다양하다는 점[3], 그리고 부적합 통지의 내용(nature)을 명세하여야 하는데, 이 요구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 등이다. 즉 부적합의 내용(nature)이 무엇이며, 통지내용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CISG상의 부적합 통지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통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4]. 이러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와 관련한 최근의 국내문헌은 사동천 교수[5], 하삼주 교수[6], 하강헌 교수[7] 등의 논문을 들 수 있고, 국외논문은 Harry M. Flechtner 교

---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3)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상법 제69조). 그리고 미국통일상법전에는 매수인은 위반을 발견했을 때 또는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위반을 매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미국통일상법전 제2-60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물품매매법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또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상당한 기회를 갖기까지는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영국물품매매법 제34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Warsaw- Oxford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매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 수입업자인 매수인은 검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수출업자인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Warsaw-Oxford규칙 제19조).

4) 우리 상법상의 부적합의 통지는 매도인이 사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자의 종류와 수량부족 정도를 알리면 족하지,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이태희, 앞의 논문", 임홍근□이태희(공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p. 135.).

5) 사동천, "매수인의 물품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국제거래법연구」제16권 2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pp. 263~288.

6) 하삼주, "외국판례를 통해 본 국제상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물품부적합 통지의무",「상사판례연구」제20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pp. 887~915; 하삼주, 여태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의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상사법연구」제23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pp. 577~612.

7) 하강헌, "CISG상의 불일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1권 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pp. 91~105.

수[8]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부적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거나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의 범위를 CISG 제39(1)항에 한정하고, 부적합 통지의 내용(nature)을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가를 탐구하여 실무자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부적합 통지의 의의를 살펴보고, 부적합 통지 내용의 상세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부적합 통지의 의의

1. 부적합의 개념

CISG 제39조에서 말하는 부적합의 개념은 제35조에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CISG 제35조에 따르면, 물품의 부적합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고, 다만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ⅰ)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ii)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iii)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매도인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in a manner adequate)으로 용기에 담겨지거

---

8) Harry M. Flechtner, "Conformity of Goods, Third Party Claims, and Buyer"s Notice of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CISG""), with Comments on the ""Mussels Case,"" the ""Stolen Automobile Case,"" and the ""Ugandan Used Shoes Case",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Law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Law Working Paper Series, 64, 2007(http://law.bepress.com/pittlwps/papers/art64).

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물품의 부적합은 품질의 부적합뿐만 아니라 수량의 부적합, 명세의 부적합, 포장의 부적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9]. 여기서 '전혀 다른' 물품(이종물, different goods)의 인도[10] 및 서류상의 부적합[11] 등도 물품의 부적합의 개념에 포함된다. 결국 물품의 부적합이라 함은 물품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약상 또는 CISG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일체의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2]

2. 부적합 통지의 방식

1) 통지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CISG 제39조는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13], 당사자들은 부적합 통지 방식에 대하여 특정한 방

---

9)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2005), Art.35, para. 4.

10) 부적합한 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different goods)을 구별하는 국내법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CISG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 CISG 제35조는 넓은 의미에서의 부적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핵심은 매도인의 인도가 계약에 적합한가 여부에 있다. 따라서 계약에서 요구하는 명세와 전혀 다른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제35조 소정의 물품적합의무의 위반이 된다(John O. Ho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ara. 256(1).).

11) 서류상의 부적합에 관해서 CISG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CISG는 물품이 때로는 서류를 통해 인도된다는 전제 하에서 초안되었으며, CISG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것도 매도인의 의무의 일부이고, 서류의 하자보완을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서류상의 부적합 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John O. Honold, ibid., para. 256.).

12) 허광욱,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UN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p. 52; 사동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p. 15.

13) *MCC-Marble Ceramic Center v. Ceramica Nuova D'Agostino*, Federal Appellate Court(11th Circuit) UNITED STATES, 29 June, 1998, Unilex(CLOUT case No. 222)(매수인은 주문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 주문서는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리고 공인된 서식으로 불평을 제기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당사자의 계약의 일부분이 된다면,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두통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전제에 의하여 판결은 내려질 것이다. 그 법정은 그 조항이 사실적으로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하급법

식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방식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합의된 방식대로 통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에 통지를 서면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서면방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보 또는 텔렉스에 의한 통지로 포함된다.[14]

2) 통지방식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적합 통지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에도 CISG 제27조[15]가 적용되는데, 매수인이 전달과정에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매수인의 부적합의 통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통지수단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텔렉스, 팩스, 전보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국제거래에서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통신수단은 팩스, 텔렉스, 전보, 일반우편 혹은 전자메일 등인데, 팩스, 텔렉스, 전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 우편 서비스 시설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통지수단이 될 것이다.

(2) 전자기록에 의한 통지

전자메일(e-mail) 등을 포함하는 '전자기록'[16]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통지방식이다. CISG가 제정

원으로 환송하였다.).

14) Art. 13, CISG.

15) Art. 27, CISG;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Part of the Convention, if any notice, request or other communication is given or made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and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 delay or error in the transmission of the communication or its failure to arrive does not deprive that party of the right to rely on the communication."

16) 전자기록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전자기록'은 EDI나 전자우편, 텔레그램, 텔렉스,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 자기적, 광학적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한다.(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rticle 4(c).)

될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EDI 등의 발달로 보편화된 통지 방법이다. 따라서 전자메일 등을 포함하는 전자기록에 의한 통지방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17] 다만 구체적인 발신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계약의 해석 및 국제상관습이나 당사자 간의 관행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UN전자계약협약[18]은 "전자통신의 발신시기를 전자통신이 송신인 또는 송신인을 위하여 전자통신을 송신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통신이 송신인이나 송신인을 위하여 전자통신을 송신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전자통신이 수신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19].

(3) 구두 혹은 전화 통지

매수인이 부적합통지를 구두나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20]. 다만 전화나 구두통지의 경우 증거확보 및 입증책임의 문제를 이유로 하여 서면확인서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판례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매수인의 부적합통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21] 전화로 통지를 발송했다는 매수인의

---

17) 사동천, "매수인의 물품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7, p. 268.

18) UN전자계약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을 바탕으로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모델법을 병합하여 새로운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하여 초안되었으며, 2005년 11월 23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국제계약과 관련하여 전자적 통신이 사용될 경우 법적 확실성과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19) Art. 10(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e time of dispatch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leaves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or, i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not left a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originator or of the party who sent it on behalf of the originator, the time whe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received."

20) A/CN.9/SER.C/DIGEST/CISG39, para. 5.

21) LG(Landgericht) Frankfurt, Germany, 9 December 1992,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화통지가 통지요건을 사실상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시하여, 이론적으로 전화통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다른 판례에서는 전화통지의 유효성을 이론적으로 인정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제39조의 통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경우

주장(buyer's claim to have given telephonic notice)이 증거를 구성하는 여러 사실들(evidentiary issues)로 인하여 무효로 판정된 사례도 있다.[22] 매수인이 전화로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한 다른 사례에서도, 매수인은 전화 통지를 한 날짜, 대화를 한 상대방, 부적합에 관하여 전달한 정보 등을 증명해야 했다. 만약 매수인이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제39조의 통지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23] 하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한 구두 통지(for sufficient oral notice)에 대하여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을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전화로 통지(telephone notice given to the seller's agent)한 경우, 매도인이 이 전화 통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서면통지를 추가로 할 의무(was obliged to follow¬up with written notice to the seller)를 부담한다.[24]

도 있다(Landgericht Frankfurt, Germany, 13 July, 1994, Unilex.).; 몇몇 판례들은 통지의 형식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 통지지연의 이유를 들어 전화통지가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Bochum, Germany, 24 January 1996, Unilex; Rechtbank (District Court) Kortrijk, Germany, 16 December 1996, Unilex).

22) Landgericht(District Court) Marburg, Germany, 12 December 1995, Unilex(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전화로 통지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통지를 유효한 통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Amtsgericht(Lower Court) Kehl, Germany, 6 October 1995, Unilex(본 사건에서도 매수인은 전화로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주장을 증명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Stuttgart, Germany, 31 August 1989, Unilex(CLOUT case No. 4)(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전화 통지를 인정하였지만, 매수인이 통화날짜 또는 통화의 수신인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3) Landgericht(District Court) Frankfurt, Germany, 13 July 1994, Unilex(본 사건은 전화 통지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설정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통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언제, 누구와 무엇을 통화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andgericht Stuttgart, Germany, 31 August 1989], Unilex)(CLOUT case No. 4).

24) Rechtbank van Koophandel Kortrijk, Belgium, 27 June 1997,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매수인이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서면으로 가능한 한 빨리 불만사항을 확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부적합 통지의 형식 – 명시적 혹은 묵시적 통지

매수인은 명시적으로만 부적합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부적합 통지도 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ISG 제39조의 법문에 따르면, 부적합의 내용(the nature of lack of conformity)을 명세하여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부적합 통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부적합 통지를 묵시적으로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법원은 CISG 제39조에서 요구하는 부적합 통지는 명시적이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25]

3. 부적합 통지의 수신인

CISG 제39조(1)항의 조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 통지의 수신인은 당연히 매도인이다. 따라서 부적합 통지의 수신인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발송한 경우이고, 둘째는 무권대리인에게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발송한 경우이다. 그리고 셋째는 매도인과 관련된 사람(단순 브로커 혹은 고용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이다.

1)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는 문제부터 살펴보

---

25) Landgericht(District Court) Aachen, Germany, 28 July 1993,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묵시적 통지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CISG 제39조의 법문은 명시적 부적합 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어떠한 부적합 통지도 이루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앞의 판례와는 달리, 항소임에서 판정내용이 번복된다. 즉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즉, CISG 29조(1)항에 따라서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사실, 부적합 통지를 수령한 이후의 매도인의 대응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묵시적인 제안(implied offer)을 의미하고, 매수인은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CISG 제18조(1)항에 따라 침묵 그 자체는 승낙이 되지 않지만, 다른 상황과 결합하여서는 침묵도 승낙이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물품을 직접 재판매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를 듣고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CISG상의 구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침묵함으로써 승낙한 것이 된다.'(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öln, Germany, 22 February 1994, Unilex).

자. CISG 제39조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보유한 자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의 권한(the power of representation)은 계약법과는 별도의 독립된 문제(a separate matter)이다. 그래서 대리인이 법적 거래(legal transaction)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경우라면,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하고[26], 통지(declaration)를 수령하기로 수권된 사람의 표현대리권(表現代理權)의 경우(in the case of apparent authority), 표현대리권이 발생한 지역의 법률이 적용된다.[27] 그러면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한 경우, 이러한 부적합 통지는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일까? 수령자의 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의 문제(the question of the recipient's agency status and authority)는 CISG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할지라도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례가 있다. 독일 매수인(피고)은 X로부터 건물의 외관 장식용 석재(stones for facades)를 주문하였는데, X는 이탈리아 매도인(원고)의 이름으로 그 계약에 합의하였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이후, 매수인은 X에게 석재(stone)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ISG는 통지의 수신인에 관한 조문은 없다. 그러므로 이번 문제는 국내법, 특히 독일 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독일 법에 따르면, X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고, X에게 전달된 부적합 통지는 적합한 통지'라고 판시하였다.[28]

2) 무권대리인에게 전달한 경우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로서 무권대리

---

26) 한국 국제사법 제18조 참조.

27)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 39, para. 14.

28) Landgericht Köln, Germany, 30 November 1999, Unilex(CLOUT case No. 364).

인(unauthorized representatives)을 사용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사용이 CISG 제27조의 의미에서 적절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권대리인의 사용은 적절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며[29], 매수인은 정시에 매도인에게 부적합 통지가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고객이 가구의 하자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매수인과 매수인의 고객간의 통신(correspondence)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관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39조의 통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30]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통신(correspondence) 역시 부적합 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통신문에 포함된 문구들(the phrases included in the correspondence)이 너무나 일반적이고(too general), CISG 제39조(1)항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부적합의 내용을 명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브로커 혹은 고용인에게 통지한 경우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상업적 대리인(commercial broker)이 아닌 브로커(self-employed broker)에게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중개인(intermediary)으로 행동하였지만, 그 이후 매도인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지 않은(had no further relationship to the seller) 독립된 제3자(an independent third party)에게 부적합 통지를 발송한 경우, 이러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제27조의 의미에서 그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에 의한 부적합 통지가 아니다.[31] 그래서 매도인이 부적합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때 매수인이

---

29)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 39, para. 14.

30) Kantonsgericht Nidwalden, Switzerland, 3 December 1997, Unilex(CLOUT case No. 220).

31) Landgericht(District Court) Kassel, Germany, 15 February 1996,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매도인이 부적합 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X는 매도인의 상업적 대리인이 아닌 브로커로 행동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부적합에 대한 적절한 수신인이 아니었다. 브로커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것 역시 제2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의 통지는 아니다.')

위험을 부담 한다.

또한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지만,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 통지를 전달하기로 약속한 매도인의 고용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전송한 경우, 그 고용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불충분한 통지가 된다.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직접적으로(personally) 매도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부적합 통지를 수령하였음을 확증(ensure)하여야만 한다.[32]

4. 부적합 통지의 목적

CISG 제39조(1)항은 부적합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목적은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33]. 즉 매도인은 부적합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대체품 인도 또는 누락된 물품의 인도, 수선 또는 매수인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타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평가할 수 있고, 부적합을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34]

둘째, 부적합통지는 매도인의 물품검사의 단초(the basis on which to conduct his own examination of the goods)를 제공하는 것이다[35].

---

32) Landgericht Bochum, Germany, 24 January 1996, Unilex(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적절한 사람에게 부적합 통지를 전송하지 못하였다. X는 세일즈 맨으로 고용되었지 부적합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수권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X는 매도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행동하였다. 매수인은 X가 매도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었다.).

33) Peter Schlechtreim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38, para. 4.

34) Landgericht(District Court) Erfurt, Germany, 29 July 1998, Unilex(CLOUT case No. 344)(본 사건은 이탈리아의 매도인(원고)이 스포츠 신발의 생산에 필요한 신발바닥재료(soles)를 독일의 매수인(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은 일부의 신발바닥재료를 거절하고 대금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oblenz, Germany, 31 January 1997, Unilex(CLOUT case No 282)(본 사건도 통지의 목적은 매도인에 의한 하자치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묵시하고 있다.).

셋째,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의무 위반의 발생여부에 관한 즉각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36] 즉 매도인이 자신의 물품인도의무를 계약내용에 비추어보아 적합하고 올바르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CISG 제38조 및 제39조의 기초적인 목적이다. 물품인도에 수반하여 발생한 부적합과 관련하여 종종 그 부적합이 매도인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지 혹은 매수인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인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필요하다[37].

넷째,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에게 부적합과 관련한 매수인과의 협상 혹은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매도인에게 협상 혹은 분쟁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38]. 즉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클레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데(to determine how to proceed in general)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39] 결

---

35) Official Records, pp. 34-35.

36) Oberster Gerichtshof(Supreme Court), Austria, 27 August 1999, Unilex(본 사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분할 인도하였는데, 최종 선적분을 인도한 후에 매수인이 부적합의 이유를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각 분할분을 독립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통지는 지연되었고,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도 매수인이 각 분할분을 독립적으로 즉시 검사하여 부적합을 통지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ln, Germany, 21 August 1997, Unilex(CLOUT case No. 284)(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적정한 시간에 물품검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의 1개월 이내의 검사는 합리적인 것이지만, 인도된 물품이 이전에 인도된 물품들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즉각적인 검사가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부적합여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즉각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적절한 부적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인도에 수반하는 연속적인 부적합이 발생하였다.) ; Landgericht(District Court) M□nchen, Germany, 3 July 1989, Unilex(CLOUT case No. 3).

37) Willibald Posch & Thomas Petz, "Austrian Cases on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6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2000) 1-24, at 17-18

38)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38, para. 4.

39) Landgericht(District Court) Saarbr□cken, Germany, 26 March 1996, Unilex(CLOUT case No. 337)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부적합이 발견되자마자 부적합의 성질을 명세하여 부적합 통지를 매도인에게 하는 목적이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하거나 물품을 검사하거나 혹은 물품을 재인도하는 등의 대응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Tribunale(District Court) Vigevano, Italy, 12 July 2000,

국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의 목적은 분쟁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매도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40]. 한편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요건은 매수인의 신의성실의무와 관련되어 있다[41].

5. 부적합 통지와 관련한 당사자의 합의

CISG 제39조도 제6조의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자치(parties' power)에 종속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의 CISG와 관련한 많은 판례들도 당사자들이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와 관련한 합의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적합 통지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그러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42].

Unilex(CLOUT case No. 378)(본 사건에서 법원은 물품에 문제가 있음' 혹은 물품에 하자가 있음'이라고 단순히 표시한 통지로는 매도인이 부적합에 대한 대응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0) Landgericht(District Court) Kassel, Germany, 15 February 1996, Unilex; Oberster Gerichtshof (Supreme Court), Austria, 27 August 1999, Unilex.

41) Rechtbank [District Court] Zwolle, Netherlands, 5 March 1997, Unilex.

42) Canton of Ticino Tribunale d'appello(Appellate Court), Switzerland, 8 June 1999, Unilex(CLOUT case No. 336)(본 사건에서 법원은 물품 수령 후 8일 이내에 부적합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합의에 따라 8일 내에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합의를 원용할 수 있고, 이는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Giessen, Germany, 5 July 1994,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은 CISG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통지시기와 관련하여 CISG 제39조의 효력을 감퇴시키고 있다. 매수인은 합의된 8일 이내에 부적합 통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CISG 제39조 하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Hannover, Germany, 1 December 1993, Unilex(본 사건은 신발의 매매와 관련한 사건인데, 법원은 부적합 통지기간을 10일로 결정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정하였다.).;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7331 of 1994, Unilex(CLOUT case No. 303)(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합의된 기간 내에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정하였다).'; Vienna Arbitration Award, Austria, Case No.

그러나 몇몇 사례들은 부적합 통지를 규율하는 계약조항의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appear reluctant). 즉 앞의 사례들은, 심지어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부적합의 통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CISG 제39조의 기준을 원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3] 계약조항들은 제39조의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만 강제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44]. 물론 부적합 통지조항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계약성립규정[45](under applicable contract formation rules)에 의해서, 부적합 통지와 관련한 계약조항이 당사자의 합의의 일부분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

SCH-4318 of 15 June 1994, Unilex(CLOUT case No. 94)(본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제39조의 효력을 감퇴시키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합의된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정하였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Baden-Baden, Germany, 14 August 1991, Unilex(CLOUT case No. 50).; Oberster Gerichtshof(Supreme Court), Austria, 30 June 1998, Unilex(CLOUT case No. 305)(부적합 통지의 발송시기를 규율하는 계약조항의 준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Arrondissementsrechtbank(District Court) Zwolle, Netherlands, 5 March 1997,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품의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매도인의 표준조건은 계약에 적용되는데, 냉동물품의 하자 통지는 단기간 내에(short term)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 시장(fish market)의 관습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할 때 이러한 매도인의 표준조건이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법원은 직접적으로 매도인의 표준조건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43)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M□nchen, Germany, 11 March 1998, Unilex (CLOUT case No. 232)(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물품의 검사기간을 2주간으로 합의하고 표준계약조건에 삽입하였는데,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그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부적합을 판단함에는 제39조의 요건을 적용하였다.) Oberlandesgericht (Appellate Court) Saarbr□cken, Germany, 13 January 1993, Unilex (CLOUT case No. 292)(본 사건은 무역관습이 CISG 제39조의 효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9조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44)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M□nchen, Germany, 11 March 1998, Unilex (CLOUT case No. 232);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7331 of 1994, Unilex (CLOUT case No. 303)(쇠가죽의 매매와 관련한 1994년의 ICC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인도 후 1달이라는 하자통지기간을 인정하고, 또 그 기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합리적인지, 합리적성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CISG 제38조 및 제39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5) CISG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계약성립규정은 협약의 제2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지라도(can derogate from article 39), 합의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조항이 불명료(illegible)하거나(즉, 구속되려는 의도가 없거나)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생성한 문서상에 일방적으로 표시된 경우(appeared on documents unilaterally generated by the seller)라면,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일부분으로 될 수 없을 것이다[46].

다른 한편, 만약 무역관습이 CISG 제9조에 따라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면[47], 부적합 통지와 관련한 무역관습은 제39조를 배제할 수 있다. CISG 제39조는 부적합의 통지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다루고 있지 않는 특정한 이슈들에 대한 법적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48].

---

46) Tribunale(District Court) Vigevano, Italy, 12 July 2000, Unilex(CLOUT case No. 378)(당사자들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소송서류에 단순히 국내법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여서, CISG를 배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MCC-Marble Ceramic Center v. Ceramica Nuova D'Agostino*, Federal Appellate Court(11th Circuit), United States, 29 June 1998,Unilex(CLOUT case No. 222)(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비록 각각의 당사자들이 인도 후 10일 이내에 하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매수인이 하기로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서식에 사인하였을지라도, 당사자들이 그 규정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구속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제8조 1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결하였다. 한 법정은 인도 이후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하자통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은 매수인을 구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CISG의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Baden-Baden, Germany, 14 August 1991, Unilex(CLOUT case No. 50)(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은 계약에서 설정된 인도 후 30일 내에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Saarbr□cken, Germany, 13 January 1993, Unilex(CLOUT case No. 292).

47)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Saarbr□cken, Germany, 13 January 1993, Unilex(CLOUT case No. 292)(본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무역관습에 의하여 CISG 제38조 및 제39조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인도 후 8일 이내에 통지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는 무역관습의 적용가능성을 배제 한다"고 판시하였다.

48)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4 December 1996, Unilex(CLOUT case No. 229)(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즉각적 통지를 요구하는 합의는 인도 시에 존재하는 하자를 통지할 의무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자는 제39조 1항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다.).;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8611 of 23 January 1997, Unilex(하자의 통지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예를 들어, 통지내용의 기재(통지는 제기된 하자와 관계있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과 같은 것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제39조 1항을 참고함으로써 합의를 보충하여야 한다.).

Ⅲ. 부적합 통지내용의 상세 정도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 내용(the contents of a series of letters)은 제39조(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49] 따라서 명료한 부적합이건, 숨은 부적합이건 간에 그 통지는 발견한 부적합은 물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특징, 성질을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부적합통지와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그 물품 부적합을 확인하게끔 그 취지도 최고하여야 할 것이다[50]. 이러한 규정이 의도하는 바는 앞에서 언급한 부적합 통지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합 통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적합의 내용(nature)을 기재하여 통지하는데, 부적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는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적합 통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상세정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부적합 통지의 내용

CISG 제39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적합 통지 의무는 인도된 물품이 부적합하다고 매수인이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합성의 개념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적합 통지의 내용도 물품의 부적합, 즉 수량, 품질, 설명서, 포장의 부적합뿐만 아니라 이종물의 인도, 서류상의 부적합도 포함한다.

1) 품질의 부적합

사례에 나타난 부적합 통지의 내용을 보면, 물품의 부적합이 물품에 수반하

---

49) Cour d'appel(Appellate Court) Versailles, France, 29 January 1998(CLOUT case No. 225.)(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매수인이 수차례 보낸 부적합의 통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되었으며, CISG 3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50) 이태희, "앞의 논문", 임홍근・이태희(공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p. 135.

는 적절한 지시 매뉴얼(proper instruction manual)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51]에도 제39조의 통지요건이 적용되었다. 또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물품수량의 불일치정도(너무 많거나 적은 물품의 인도[52]), 인도된 물품의 품질의 일탈정도(deviations), 계약상 합의된 물품에 비하여 인도된 물품의 이종정도(an aliud)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필요하다.[53][54]
한편 계절적 상품(seasonal goods)의 인도지연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에도 역시 제39조의 통지요건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55][56].

2) 물품검사 결과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였다면, 검사의 핵심적인 결과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7] 그러나 특히 기계나 공구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적합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후의 명시만으로 족할 것이다.

3) 부적합의 영향

매수인이 부적합을 명기할 때, 인도된 물품이 어느 정도까지 부적합의 영

---

51) Landgericht(District Court) Darmstadt, Germany, 9 May 2000, Unilex(CLOUT case No. 343).

52)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D□sseldorf, Germany, 8 January 1993, Unilex(CLOUT case No. 48);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oblenz, Germany, 31 January 1997, Unilex(CLOUT case No. 282); Landgericht(District Court) Landshut, Germany, 5 April 1995, Unilex.

53)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 39, para.8.

54) 1989년 독일의 판결에서, 법원은 비숙련 및 패션상품으로서 부적당한 마무리 작업(improper fitting of fashion goods)'이라고만 단순히 언급한 통지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는(inadequate) 판시를 하였다. 그 이유는 물품의 하자에 관하여 정확하게 명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Landericht Munchen I, HKO 372/89(3 July 1989), published in German: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IPRax 1990, 316; Comment by Reinhartm IPRax 1990, p. 289.).

55) Amtsgericht(Lower Court) Augsburg, Germany, 29 January 1996, Unilex.

56) 하지만 다른 판례들은 이 판결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도시기(제33조)를 규율하는 CISG의 규정이 계약적합성과 제3자의 클레임'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CISG의 제3부 제2장 제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제3부 제2장 제1절)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7) Enderlein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Art. 39 note 5.

향을 받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58]. 부적합 통지의무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아서, 인도된 물품의 총 합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인도된 물품이 부적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확한 부족수량을 명시해야만 매도인이 그에 상응하는 수량을 추가 인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적합의 영향을 받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파악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개 특정한 상황(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수량파악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59]. 그리고 급속히 변질 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매도인 자신이 부적합의 정도에 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내구성 있는 물품의 경우보다 더욱 정확한 수량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만, 영향을 받은 물품의 정도에 대한 대략적인 표시가 요구 된다[60].

4) 복합적인 부적합의 경우

물품이 여러 가지 측면(예를 들어 수량과 품질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부적합(each separate lack of conformity)이 통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61], 매수인이 하나의 부적합에 관한 적정한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기된 모든 부적합(all claimed non-conformities)에 대하여 유효한 통지(valid notice)를 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2].

---

58)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 39, para. 9.

59) ULIS에 관해서는 OLG Celle IPRax 1987, 313;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eds), ibid, Art. 39, para. 9.

60)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eds), ibid, Art. 39, para. 9.

61) Staudinger and Magnus, Art. 39, para 22;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eds), ibid, Art. 39, para. 9.

62)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8 March 1995, Unilex(CLOUT case No. 123); Landgericht(District Court) Bielefeld, Germany, 18 January 1991,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인도된 베이컨의 부적합의 일부분을 원용할 수 있음을 허용한 반면에, 다른 부분의 부적합은 충분히 명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불결한 베이컨의 인도(적절하게 부적합 통지됨)와 만족할만한 상태의 훈제가 안 된 베이컨의 인도(부적절하게 부적합 통지됨)를 포함하고 있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Landshut, Germany, 5

또한 분할분 인도물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각 분할분은 개별적인 통지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63]

2. 부적합한 성질의 상세한 기술

CISG 제39조(1)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nature)을 특정하여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는 것'을 협의로 해석하여 부적합한 성질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ULIS 제39조에 관한 판례 및 독일의 판례는 부적합의 통지가 어느 정도로 상세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64]. 또한 몇몇 사례들도 부적합 클레임이 제기된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65].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기계가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이 구매한 유형 중의 하나일지라도, 통지가 인도날짜 혹은 시리얼 넘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April 1995, Unilex; Oberster Gerichtshof(Supreme Court), AUSTRIA, 27 August 1999, Unilex.

63) Staudinger/Magnus, Art. 39, para 56;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39, para. 9.

64)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ibid., Art. 39, para. 6.

65)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3 November 1999, Unilex(CLOUT case No. 319)(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적 장비(technical equipment)에 하자가 있는 경우,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의 증상(symptoms)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자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기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8611 of 23 January 1997, Unilex;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oblenz, Germany, 31 January 1997, Unilex(CLOUT case No. 282)(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5채의 담요가 누락되었다고 부적합 통지를 하였지만, 어느 디자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다른 담요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부적합을 치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상품을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München, Germany, 20 March 1995,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냉동 베이컨의 경우, 부적합이 발견된 그 날에 상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남'이라고 텔렉스로 부적합 통지를 한 것은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욱 상세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첫 번째 부적합 통지보다 더욱 상세하게 부적합 통지를 했어야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 통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문제가 된 기계의 기록 파일을 찾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66] 또한 이러한 부적합 통지요건(specificity requirement)은 전화를 이용한 부적합의 구두 통지에도 적용된다.[67]

3. 부적합한 성질의 일반적 기술

매수인이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를 할 때 부적합의 내용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CISG 제39조(1)항의 본래 버전(original version)은 앞에서 언급한 독일법의 해석보다는 자유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68]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세부사항(precise details)을 보내야 한다는 요건은 오로지 독일법 계통에서만 보이고[69], 다른 법 계통에서는 규정이 없거나 적어도 엄격하지 않다.[70] 그리고 다수의 판례들도 부적합 통지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an overly demanding standard of specificity)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으며,[71] 매수인의 부류(different kinds

---

66) Landgericht(District Court) Marburg, Germany, 12 December 1995, Unilex(법원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기계 1대만을 구입했다는 사실에도 관계없이, 그 기계의 시리얼 넘버 및 인도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정적이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67) Landgericht(District Court) Stuttgart, Germany, 31 August 1989, Unilex(CLOUT case No. 4)(발견된 부적합과 관련하여, 법원은 전화를 이용한 통지가 허용될지라도, 본 사건에서 그러한 통지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전화 통화 일자 및 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누구인지 명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68)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 39, para. 6.

69) 독일: Staub/Brüggemann, § 377 HGB, para 134 이하 참조; 오스트리아: Straube/Kramer, §§ 377, 378 HGB, para 42; 스위스: Yann□, p. 82 이하 참조;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eds), ibid, Art. 39, para. 9.

70) § 2-607 UCC에 대한 공식 코멘트 No. 4 참조.

71)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4 December 1996, Unilex(CLOUT case No. 229)(본 사건에서 법원은 CISG 제39(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어떠한 오해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적합의 명세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Handelsgericht (Commercial Court), Zürich, Switzerland, 21 September 1998, Unilex(CLOUT case No. 252).(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부적합과 관련하여 충분하게 통지받을 수 있는 처지(position)에 있는 경우가 부족합 통지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지요건이 과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용어로 부적합을 통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일반인(lay

of buyers)에 따라 부적합 통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기준(different standards of specificity)이 달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 매수인은 매우 세밀하게 부적합 내용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72] 또한 기계와 기술장비가 관련된 사례에서, 법원은 부적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요건은 부적합의 증상에 대한 내용만으로 충분하며, 부적합을 야기한 기초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73]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몇몇 판례들에서도 부적합의 내용(specificity requirement)을 기술할 때 부적합한 성질에 대한 일반적 설명(general pronouncement)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부적합 사실의 통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매수인은 부적합의 정확한 내용(the precise nature of the defects)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74] 또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부적합의 내용과 그 범위 모두를 나타내어야 하고, 매수인의 물품검사의 결과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75] 그리고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클레임을 이해하고 물품을 검사한다든지 대체품의 인도를 수배한다든지 혹은 다른 부적합의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되어야 한다.[76][77] 그리고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

person)이 아닌 전문가들로부터는 더욱 상세한 부적합 통지가 기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72) Handelsgericht(Commercial Court) Zürich, Switzerland, 21 September 1998, Unilex (CLOUT case No. 252); Landgericht(District Court) Erfurt, Germany, 29 July 1998, Unilex(CLOUT case no. 344).

73)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3 November 1999, Unilex(CLOUT case No. 319); Hoge Raad(Supreme Court), Netherlands, 20 February 1998, Unilex (마루바탁 타일의 하자의 원인보다는 증상의 명세로서 충분하다는 것이 묵시되어 있다); Tribunale(District Court) Busto Arsizio, Italy, 13 December 2001,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기계의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74) Landgericht(District Court) Hannover, Germany, 1 December 1993,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부적합의 사실만을 단순히 통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매수인은 CISG제3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적합의 정확한 명세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5) Landgericht(District Court) Erfurt, Germany, 29 July 1998, Unilex(CLOUT case No. 344)(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부적합을 평가하고, 그 부적합을 치유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 CISG 제39조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 핵심적인 결과들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해하지 않고, 또한 착오 없이 매수인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것이어야 하며,[78] 어떠한 품목이 부적합의 클레임을 제기 당하였는지(what item was claimed to lack conformity), 제기된 부적합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what the claimed lack of conformity consisted of)를 매도인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되어야 한다.[79]

4. 부적합 내용의 상세정도 결정시 고려사항

매수인이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할 때 매수인은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적합 내용의 상세정도를 결정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교섭과정에서의 지위, 문화적 차이, 물품의 성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주관적 객관적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다.[80]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부적합 통지는 비전문가의 부적합 통지보다 그 부적합 내용을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부적합 내용의 상세정도에 관한 판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상투적인 용어(general terms)로 기술된 통지(예, 부적합한 물품, 하자있는 물품 또는 이종물의 인도, 열등하고 조잡한 품질, 2등급 물품, 조잡한 가공, 기계가 수리되어야 함, 불만 사항이 있음)[81]와 불만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현

---

76) Id.

77)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4 December 1996, Unilex(CLOUT case No. 229)(본 사건에서 법원은, CISG 제3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은 어떠한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명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3 November 1999, Unilex(CLOUT case No. 319);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oblenz, Germany, 31 January 1997, Unilex(CLOUT case No. 282)(본 사건에서 법원은 본질적 계약위반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계약위반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부적합 치유의 의도(willingness)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부적합의 성질 기재 요건을 규정한 목적은 매도인이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묵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78) Id.

79)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3 November 1999,Unilex(CLOUT case No. 319).

80)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op.cit., Art. 39, Para.7.

81)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Supplement 10)*, Kluwer Law and

으로 기술하여 통지하는 것(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물품임)은 대체로 CISG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합 통지의 내용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82]. 그러나 전자적 통신이 가능한 시대에, 매수인은 부적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통지를 수령한 매도인이 그 통지의 수령 후 그 통지와 관련한 문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83]

5. 부적합 통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와 미충족한 사례

1) 부적합 통지요건을 충족한 사례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부적합 통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부적합 통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들이다. 즉 매수인의 고객들이 물품에 대한 놀랄만한 숫자의 클레임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리는 통지, 신발에 구멍이 있다는 통지, 어린이용 신발의 외부 밑창과 뒷 굽이 헐거워졌다는 통지[84], 매수인의 고객들이 습성의 위생티슈를 생산하는 기계(machine for processing moist hygienic tissues)에 의하여 생산된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 속에서 강철 파편들을 발견하였고, 결과적으로 완성품 위에 녹이 끼었다는 통지[85], 마루 바닥 타일이 심각하게 조기 마모(premature wear)되었고 변색되었다는 통지[86] 등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2) 부적합 통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CISG 제39조(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은 부적합한 성질들이 불충분하게 특정되었기 때문이

Taxation Publishers, 1995, p. 325.

82) Peter Schlechtreim and Ingeborg Schwenzer(eds), ibid., Art. 39, Para.7.

83) John O. Honnold, op.cit., para 256.

84) Oberster Gerichtshof(Supreme Court), Austria, 27 August 1999, Unilex.

85)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3 November 1999, Unilex(CLOUT case No. 319).

86) Hoge Raad(Supreme Court), Netherlands 20 February 1998, Unilex.

다[87]. 즉 건물의 외관장식을 위한 석재의 라벨이 잘못되었다는 통지, 어떤 석재와 문턱(sill)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통지, 석재를 끼우기 위하여 제공된 아교에 하자가 있다는 통지(that the glue provided for mounting the stones was defective)[88]; 화초가 개화하지 않고 성장이 불량하다는 통지[89]; 면 의류(cotton cloth)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통지[90]; 가구에 잘못된 부품이 있고 파손이 심하다는 통지(notice that furniture had wrong parts and much breakage)[91]; 패션제품의 조악한 솜씨 및 부적절한 마무리(improper fitting)[92]; 치즈에 구더기가 기생하고 있음을 특정하지 못한 통지[93]; 직물의 품질에 하자있고 인도된 천의 치수를 경제적인 형태(in an economical fashion)로 절단할 수 없다는 통지[94]; 농기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지만

---

87) 매수인의 통지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다른 판례들을 다음과 같다. Landgericht(District Court) Saarbr□cken, Germany, 26 March 1996, Unilex(CLOUT case No. 337); Tribunale d'appello(Appellate Court) Ticino, Lugano, Switzerland, 8 June 1999, Unilex(CLOUT case No. 336); ICC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8611 of 23 January 1997, Unilex; Landgericht(District Court) Stuttgart, Germany, 31 August 1989, Unilex(CLOUT case No. 4); Handelsgericht(Commercial Court) Z□rich, Switzerland, 21 September 1998,Unilex(CLOUT case No. 252).

88) Landgericht(District Court) K□ln, Germany, 30 November 1999, Unilex(CLOUT case No. 364)(이 사건의 경우, 어느 특정 항목이 라벨링되지 않았는지를 명세하지 못하였고, 사이즈가 잘못된 수량 및 특정 항목을 명세하지 못하였고, 하자있는 아교로 작업을 완수한 석재의 정확한 수량을 명세하지 못하였다.).

89)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Saarbr□cken, Germany, 3 June 1998, Unilex (CLOUT case No. 290)(본 사건에서 법원은 후자가 식물의 크기 혹은 외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90) Rechtbank(District Court) Kortrijk, Belgium, 16 December 1996, Unilex.

91) Kantonsgericht(District Court) Nidwalden, Switzerland, 3 December 1997, Unilex (CLOUT case No. 220).

92) Landgericht(District Court) M□nchen, Germany, 3 July 1989, Unilex(CLOUT case No. 3)(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달되지 못하였고, 또한 부적합의 내용을 충분하게 기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이 조악하고 마무리가 부실함'이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93) Rechtbank(District Court) Roermond, Netherlands, 19 December 1991, Unilex (CLOUT case No. 98)(본 사건에서 법원은 치즈는 쉽게 부패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매수인은 적절한 기간 내에 부적합 통지를 발송하였지만, 치즈가 부패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부적합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제39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94) Landgericht(District Court) Regensburg, Germany, 24 September 1998, Unilex

시리얼 넘버 혹은 인도 일자를 명세하지 않은 통지[95]; 벌레가 먹어서 트뤼프(truffles)가 부드럽게 되었다는 통지[96]; 신발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통지[97]; 냉동 베이컨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통지[98]; 프린터에 대한 매뉴얼(documentation)이 누락되었다는 통지[99]; 신발 밑창의 재료인 가황고무(sheets of vulcanized rubber for shoe soles)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를 표시하고 있다는 통지[100]; 가죽제품이 매수인의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매수인의 고객에게 매각할 수 없다는 통지, 그리고 250개 품목이 스탬프를 잘못하였다는 통지[101]; 5릴의 담요가 누락되었다는

(CLOUT case No. 339)(본 사건에서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품질불량의 내용(nature of the quality problems)을 기재하지 않았고, 어떤 치수가 경제적 절단을 허용하는 것인지를 명기하지 않았다).

95) Landgericht(District Court) Marburg, Germany, 12 December 1995, Unilex.

96) Landgericht(District Court) Bochum, Germany, 24 January 1996,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부적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트뤼프가 부드럽게(soft) 되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기재이기 때문이다.).

97) Landgericht(District Court) Hannover, Germany, 1 December 1993, Unilex(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부적합 사실만을 통지하는 것으로는 부적합 통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CISG 제39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적합의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98) Landgericht(District Court) M□nchen, Germany, 20 March 1995, Unilex(냉동 베이컨의 경우, 부적합을 발견한 날짜에 물품에서 고약한 냄세가 남'이라고 기재하여 텔렉스로 전송한 부적합 통지는 제39조의 부적합 통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베이컨이 전부가 손상되었는지 일부가 손상되었는지는 명세하지 않았다.).

99) Bundesgerichtshof(Supreme Court), Germany, 4 December 1996, Unilex(CLOUT case No. 229)(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정시에 전달되었지만, 누락된 매뉴얼(documentation)이 전체 시스템에 관한 것인지 혹은 단일 장비로서의 프린터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CISG 제39(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어떠한 오해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적합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00) Tribunale(District Court) Vigevano, Italy, 12 July 2000, Unilex(CLOUT case No. 378)(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가 CISG 제39(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품에 하자가 있다 혹은 물품이 문제를 야기하였다'라고 통지하는 것은 매도인이 주장된 부적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101)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M□nchen, Germany, 9 July 1997, Unilex(CLOUT case No. 273). (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제품이 우리의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250개의 품목은 스탬프가 잘

통지[10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CISG 제39조(1)항의 부적합 통지요건은 앞에서 논의한 부적합 내용의 기재(specificity requirement) 범위를 벗어나서, 더욱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103]

Ⅳ. 결 론

결론에서는 매수인이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할 때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부적합의 내용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CISG 제39조(1)항에 규정된 부적합은 물품의 부적합, 즉 수량, 품질, 명세 및 포장의 부적합뿐만 아니라 이종물의 인도, 서류상의 부적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CISG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것이며, 판례들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부적합 통지의 형식은 CISG 제39조(1)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방식이 있으면 합의대로 통지하면 되고,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전달과정에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특히 전자기록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UN전자계약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부적합 통지의 수신인은 당연히 매도인이지만, 중간에 대리인이 개입하거나 무권한 대리인, 브로커 혹은 매도인의 고용인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의 문제는 CISG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 가능한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지만, 통지 요건의 충족

못 찍혀 있다'라는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대의 항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상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제39(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102) Oberlandesgericht(Appellate Court) Koblenz, Germany, 31 January 1997, Unilex (CLOUT case No. 282)(본 사건에서는 누락된 담요의 디자인을 명세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도인이 하자를 보완할 수 없었다.).

103) A/CN.9/SER.C/DIGEST/CISG/39, para. 14.

여부에 관해서 판례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권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통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며, 브로커 혹은 고용인에게 통지한 경우도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결국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 목적은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매도인에게 물품검사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 물품의 적합성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즉시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매수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매도인에게 증거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적합 통지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내용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결정된다.

그리고 부적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기재할 것인가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이나 판례에서는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술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부적합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하면 매도인의 권리는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적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재할 것인가는 앞에서 언급한 부적합 통지의 목적,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교섭과정에서의 지위, 문화적 차이, 물품의 성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주관적·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는 매도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매수인 자신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출판사, 2001,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2.

임홍근·이태희 공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2.

사동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허광욱,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UN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

www.uncitral.org.

www.unilex.

Enderlein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Publication, 1992.

John O. Ho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International, 2000,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Supplement 10)*,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5.

Nina M.Galston, Hans Smit,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tthew Nender, 1984.

Peter Schlechtreim, *Uniform Sales Law - The UN-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z(Vienna), 1986.

Peter Schlechtrei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2005)

Willibald Posch & Thomas Petz, "Austrian Cases on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ol. 6,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2000).

ABSTRACT

A Study on the Buyer's Specificity Requirement of the nature of the lack of the Conformity

Heo, Kwang Uk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is stipulated at Art. 35, CISG. According to the Art. 35, there is no directly stipulated concept of non-conformity. But Art. 35 said that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Accordingly,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contains the conformity of quality, quantity, description, delivery of different goods and documents.

Art. 39 does not specify the form of notice required. So parties can require a particular form by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d form of notice, buyer's notice must be sent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rt. 39 states that the required notice of lack of conformity must be given to the seller. Notice of defects conveyed by the buyer to an independent third party is not found to have been given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Art. 39 is subject to the parties' power under Art. 6 to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When determining which requirement must be satisfied by the buyer is specifying the nature of any lack of conformity, a mixed objective-subjective standard should be applied, which has regard to the respective commercial situation of the buyer and the seller, to any cultural differences, but above all, to the nature of the goods. Also to determine the specificity requirement is to satisfy the purpose of notice of lack of conformity.

Key Words : Lack of conformity, Notice, Nature of non-conformity.